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규정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분과위원회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보훈정책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6020호, 2026.1.6.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5.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보상·복지정책”을 “보상·의료복지정책”으로, “제대
군인정책”을 “국제협력·제대군인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
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u>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u>보상·복지정책</u> 분과위원회 및 <u>제대군인정책</u>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략) <u><신설></u>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보상·의료복지정책</u> ----- <u>국제협력·제대군인정책</u> ----- --.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의 검토·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5048